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6 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이재관·강준현·이정문

양부남 • 박정현 • 복기왕

문진석 • 이병진 • 윤종군

오세희 • 박희승 • 황명선

허성무 · 정동영 · 이연희

장종태 · 이워택 · 김정호

용혜인 • 민홍철 의원

(2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,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 행,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, 특례시의 행정적 ·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,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,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. 또한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제58조 및 제59조).

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대도시"를 "대도시 또는 특례 시(수도권 외 지역의 지방단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
  - 가.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  - 나.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  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이 나목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8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) 제58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)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도시의 행정・재정 운 영 및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다만,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 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. ----대도시 또는 특례시(수 도권 외 지역의 지방단치단체 인 경우에 한정한다)-----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하 "특례시"라 한다)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 시"라 한다) 가.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 나.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 0만 이상 대도시 다. 행정안전부장관이 나목에

② (생 략)제59조(특례시의 사무 특례) (생략)<신 설>

해당하는 대도시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·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

② (현행과 같음)
제59조(특례시의 사무 특례) ①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
·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제1
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
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할 수 있다.